종교시설 방역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설교, 노래(찬송 등)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: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
- ▲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·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
- ▲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(성가대, 청년부, 성경공부 모임 등)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
- ▲ 지역·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(부흥회, 교육, 사목자 모임, 열방센터 등)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
- ▲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,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
- ▲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▲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
- ▲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■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	■전체 수용인원의 30% (두 칸 띄우기)	■전체 수용인원의 20% (네 칸 띄우기)	■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만 인정
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	■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	■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	■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(이행기간 7.1~7.14)	* 단,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	* 단,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	
	※ 실외행사 시, 마스크 상시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공통 수칙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		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		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			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		
	④ 마스크 착용■ 관리자운영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		
	⑤ 음식섭취 금지■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		
	⑥ 손씻기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			
	 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정규예배.미사.법회.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	■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- 수칙 준수하여 참여			
	8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종교활동 전/후* 반드시 환기 *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⑤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				
	-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	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기타■ 방역관리자 지정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① 비말발생(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돌봄활동(무료봉사) 운영 시,
	■(미드그) 중시시는 답의 고를 가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마스크 착용
추가 수칙	■ 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	*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'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'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 앉기,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) -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- 공용식기(집게 등)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- 식사 시 대화 자제 -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 (손씻기)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(또는 손소독하기) (비말발생행위) 노래, 춤,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

- 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%(좌석 한 칸 띄우기) 범위 내 제한적 허용, 성가대·찬양팀(1인 제외)·큰소리 기도 등 금지
-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*·식사·숙박 등은 금지
-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 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
-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
- * (예시) 노숙인·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,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(단, 교리·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) 등
- (예외적용) 예방 접종 1차 이상 접종자는 <u>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</u>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은 운영 가능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비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소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라는 왈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사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사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사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기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사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▲ 기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라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기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라는 왈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 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	▲ 입과 코를 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종교시설 0&A

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○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-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
 - 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 -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 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* 및 모임도 금지
 - *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

Q3. 정규 종교활동(미사법화예배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- 단계별 참여인원* 기준에 따라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**하여 참여
 - * 1단계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, 2단계 30%(두 칸 띄우기), 3단계 20%(네 칸 띄우기), 4단계 비대면
 - ** 예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,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
-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, 개별 공간(예, 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Q4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- 종교시설 주관 **각종 대면 모임 활동** 및 **행사**, **숙박**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이행단계(7.1~7.14) 기간에는 금지되며 이행기간 이후 재검토
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 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-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이 모두 금지*됨
 - 다만, 2~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*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**로 실외행사가 가능함
 - * 실외행사 시 식사·숙박 금지 / 마스크 상시 착용,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,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
 - ** 2단계 100명 미만(99명까지 가능), 3단계 50명 미만(49명까지 가능)

Q5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
 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(Q3 참고)
- 단,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이행단계 기간에서는 모두 금지됨
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- Q6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
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"방송출연"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마스크 착용예외상황으로 인정함
- 종교시설의 **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** 등은 **사적 방송에**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. "방송출연" 적용은 곤란함
 -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
- ※ '마스크 착용'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Q7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

- 종교시설의 **재정(회계), 시설관리** 등 **기관** 및 **단체 운영**을 위하여 **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**한 경우에 한하여
 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**방역**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Q8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-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, 결 혼식은 '결혼식장', 장례식은 '장례식장', 공연은 '공연장'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 - 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'식당' 방역수칙 적용

Q9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수 없는 것인지?

- **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**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 - 단,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

Q10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

○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
Q11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
-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 으로 운영되는 교습, 소모임 등도 금지됨
- 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
Q12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-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, 종교시설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~4단계 운영 가능
 - *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기수칙 준수
 -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
 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**전일제 수업**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되는 보육활동·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
- ※ 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성경공부 또는 성경 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Q134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 한 단계별 인원은?

-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 - ※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

Q14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- 백신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)*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에서 제외되며.
 - * (예시)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,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
 - 접종완료자*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만 구성된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고 2m(최소 1m)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· 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
 - *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,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

Q15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2~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

-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~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
 - * (예시) 식사·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,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→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